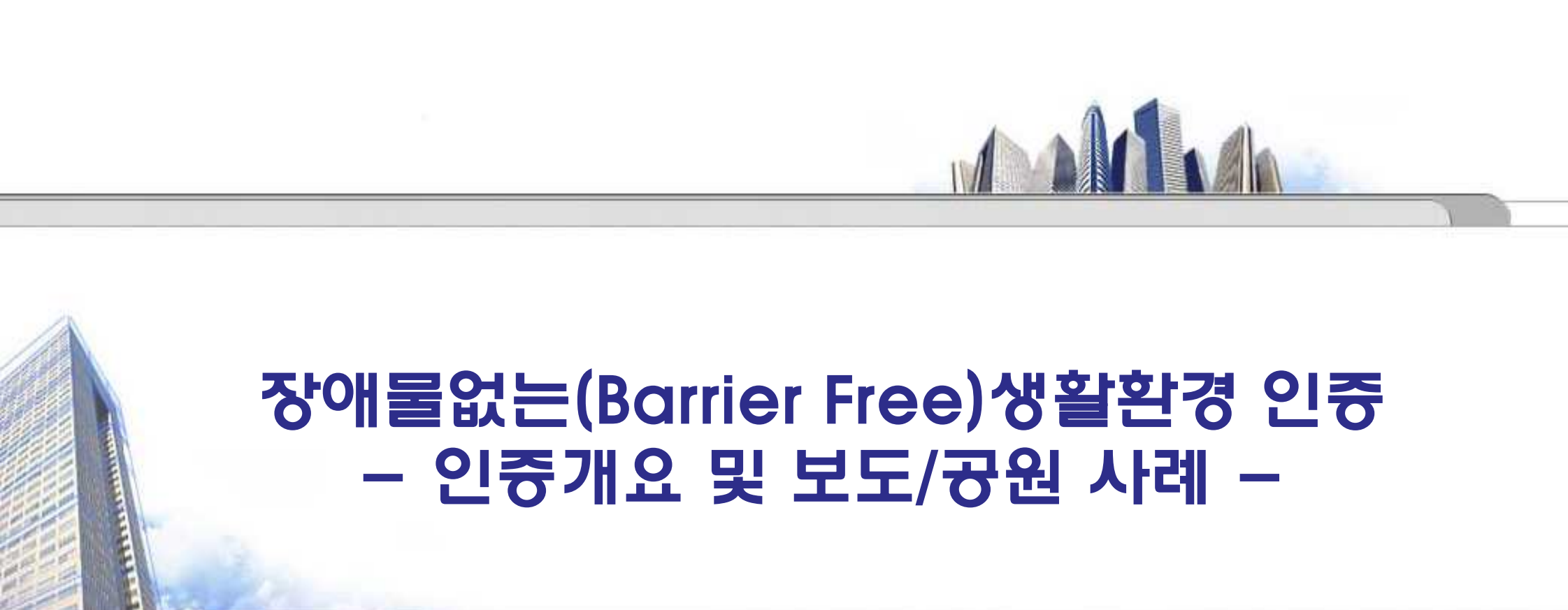




장애물없는(Barrier Free)생활환경 인증 **- 인증개요 및 보도/공원 사례 -**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 인 순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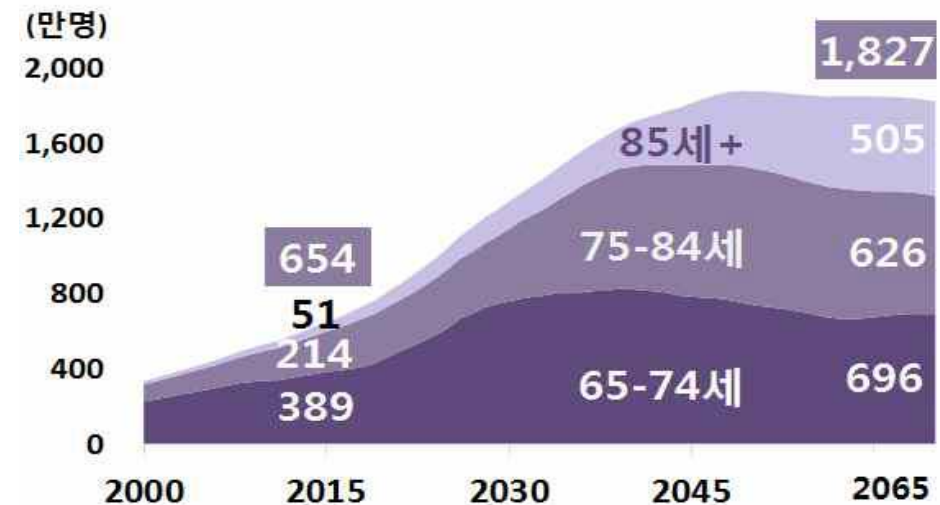
- 01 필요성
- 02 개요
- 03 인증 신청
- 04 인증실적
- 05 인증제 활성화 방안
- 06 인증사례 (보도, 공원)

I. 필요성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필요성

사회구성원의 변화

- 장애인구의 증가 및 후천적장애인의 비율 지속적 증가
 - 2014년말 기준 249만명(전체인구의 4.9%)
 - 전체장애인구의 약90%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 급격하게 고령화 되는 사회
 - 2000년 7.2% : 고령화 사회 진입
 - 2018년 14.3%로 예상 : 고령 사회
 - 2026년 20.8%로 예상 : 초고령 사회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과정

1단계 : 관련법의 도입

– 장애인복지법 개정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법 제33조(편의시설)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교통시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치를 갖추도록 규정함

– 법적용의 한계

- 시설설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현장 적용이 불가하였음
- 시설물 허가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음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과정

2단계 : 직접 관련법의 도입(공급자중심)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년 4월 제정 및 1998년 4월 이후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법적용의 한계
 - 시설물 허가시 적용되는 법으로 실질적 현장 적용이 됨
 - 다만, 최소한의 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자(시설주)가 최소 법적 규정만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한계로 인해, 장애인등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다소의 불편이 존재함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과정

3단계 : 직접 관련법의 변화(소비자중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4월 제정 및 2008년 4월 이후 시행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용 편의에 대해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후 권고로 권리구제 조치(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
- 법적용의 핵심
 - 시설이용자인 소비자가 직접 시설이용 편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적으로 변화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과정

4단계 : 직접 관련법의 변화(소비자중심)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

– 장애물없는(BF) 생활환경 인증

- 2007년 4월 제도 도입
- 최소한의 법적 규정과 달리 최대한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참여제도로 시행

5단계 : 직접 관련법의 변화(소비자중심)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

– 장애물없는(BF) 생활환경 인증

-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공공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용으로 변경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으로의 변화 과정

BF인증제도의 도입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
 - 2005년 BF인증제도 도입 논의(민간중심)
 - 2006년 BF인증제도 도입 관련 공식 논의(정부 및 민간 공동)
 - 2007년 4월 BF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정부시행)
 -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건설교통부 제2007-001호)
 - 2007년 9월 BF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 2008년 7월 BF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으로 본격 시행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인증 제도의 이해

BF인증제도의 변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2009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BF인증이 법제화 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에 BF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권장)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BF인증이 법제화 됨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의무)
 - 적용시기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인증이란?

-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만드는 환경으로 누구든 불편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
- 최대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환경으로 대지조건 등으로 인해 존재하는 기존환경의 장애물도 최소화하려는 환경

II . 개요

의 의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수행기관

● 인증주무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2년마다 주무기관 변경)

● 인증기관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

III. 인증신청

인증 대상

인 증 대 상	
개별시설인증	도 로
	공 원
	여객 시설
	건 축 물
	교통 수단
지 역 인 증	

※ 한국장애인개발원

: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인증의 종류 및 신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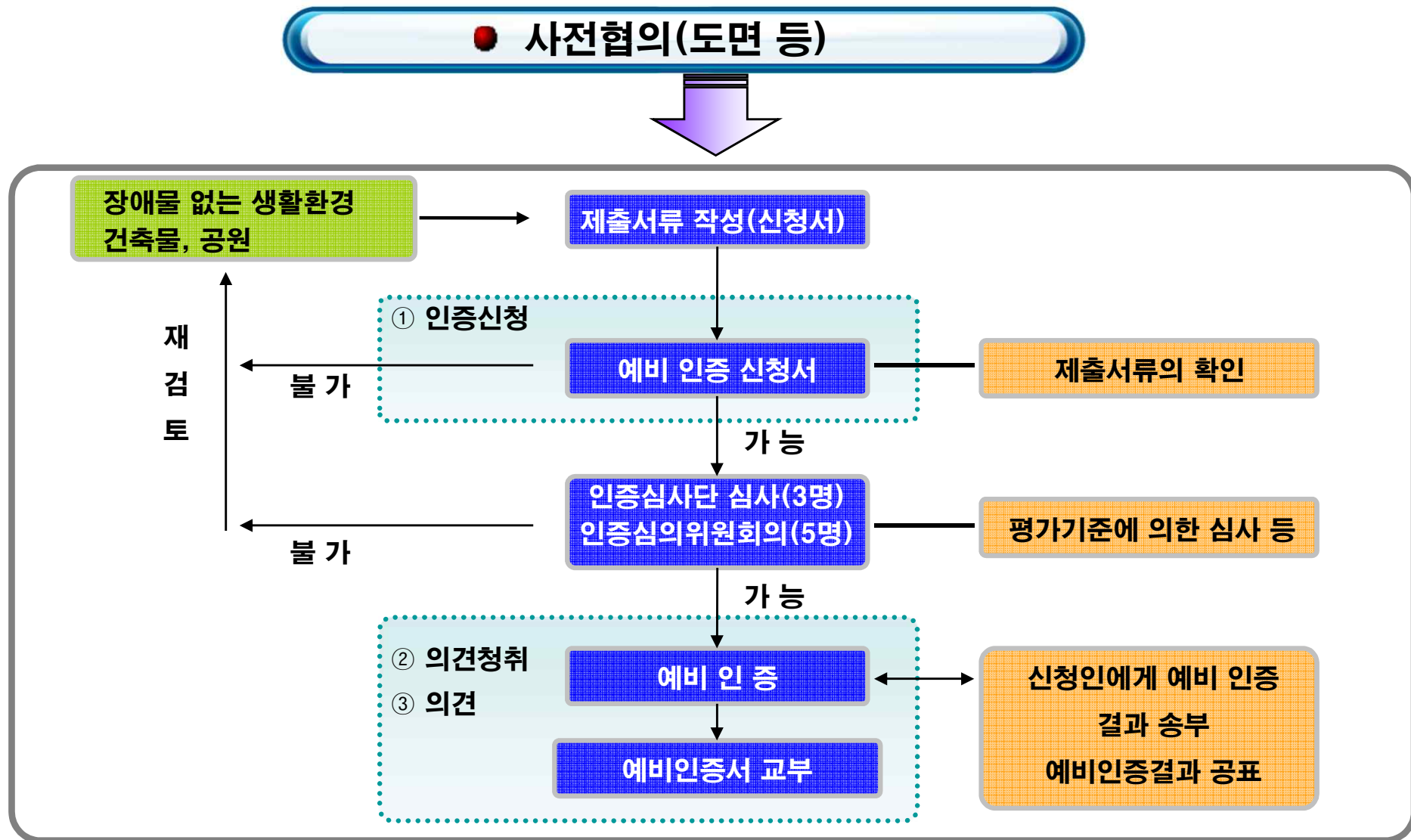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자	소유자 등	소유자 등
신청시기	본인증 전	공사완료 후
인증의무	권장	의무

인증 수수료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개별시설인증	206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286)	403
지역 인증	10만㎡~200만㎡	618
	200만㎡~300만㎡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429)	807
	300만㎡ 이상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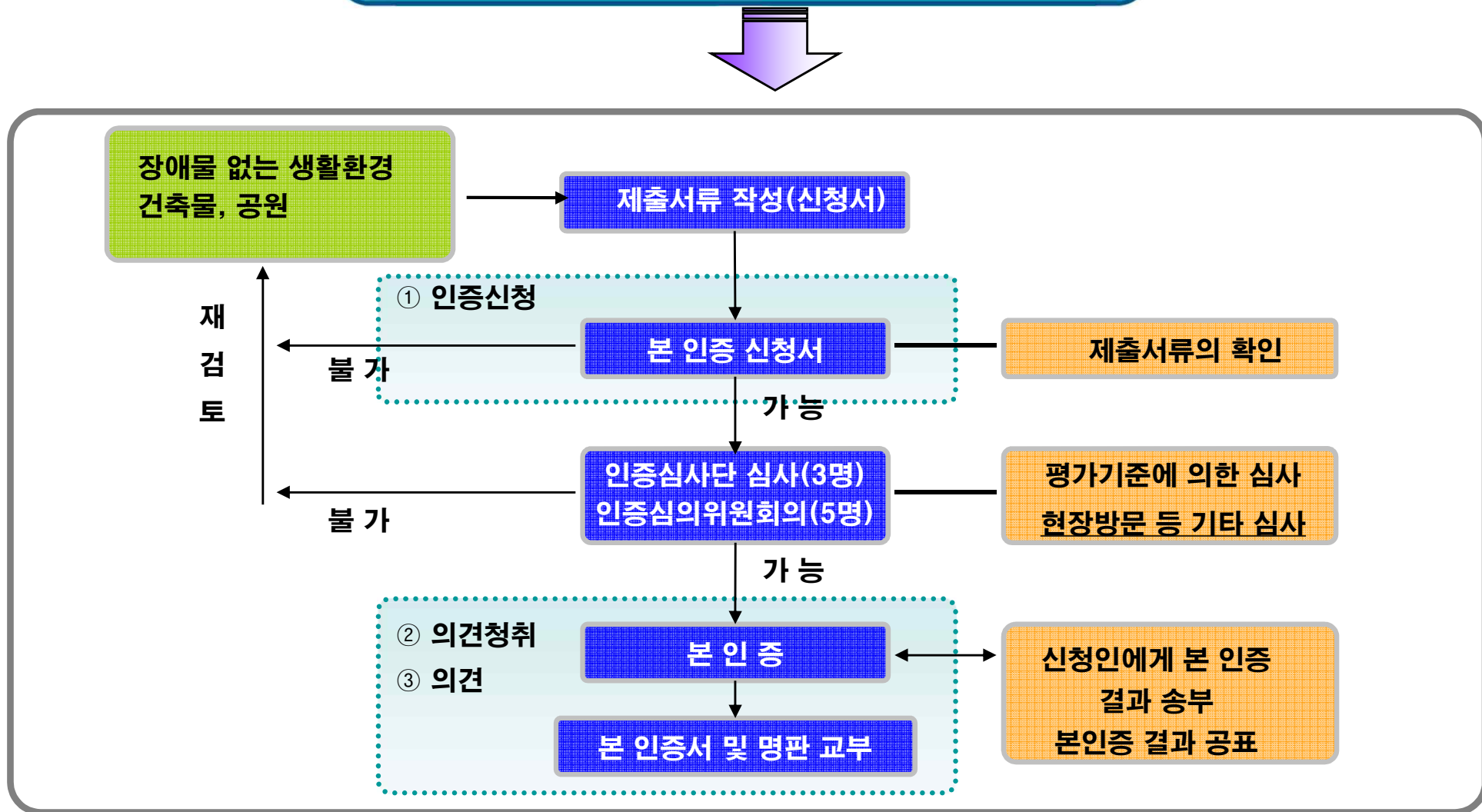
※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인증절차



본인증절차

● 사전협의(도면 또는 현장상황관련)



인증 등급

1. 최우수(★★★)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2. 우수 (★★)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일반 (★)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음

인증 유효기간

- 예비 인증 : 공사완료 후 1년 이내 본인증 신청
- 본 인 증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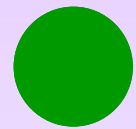
※ 사후관리(연1회이상) , 인증연장신청(본인증만료 전 신청)

인증 마크



Orange

: 기쁨, 즐거움, 사교적인, 미래지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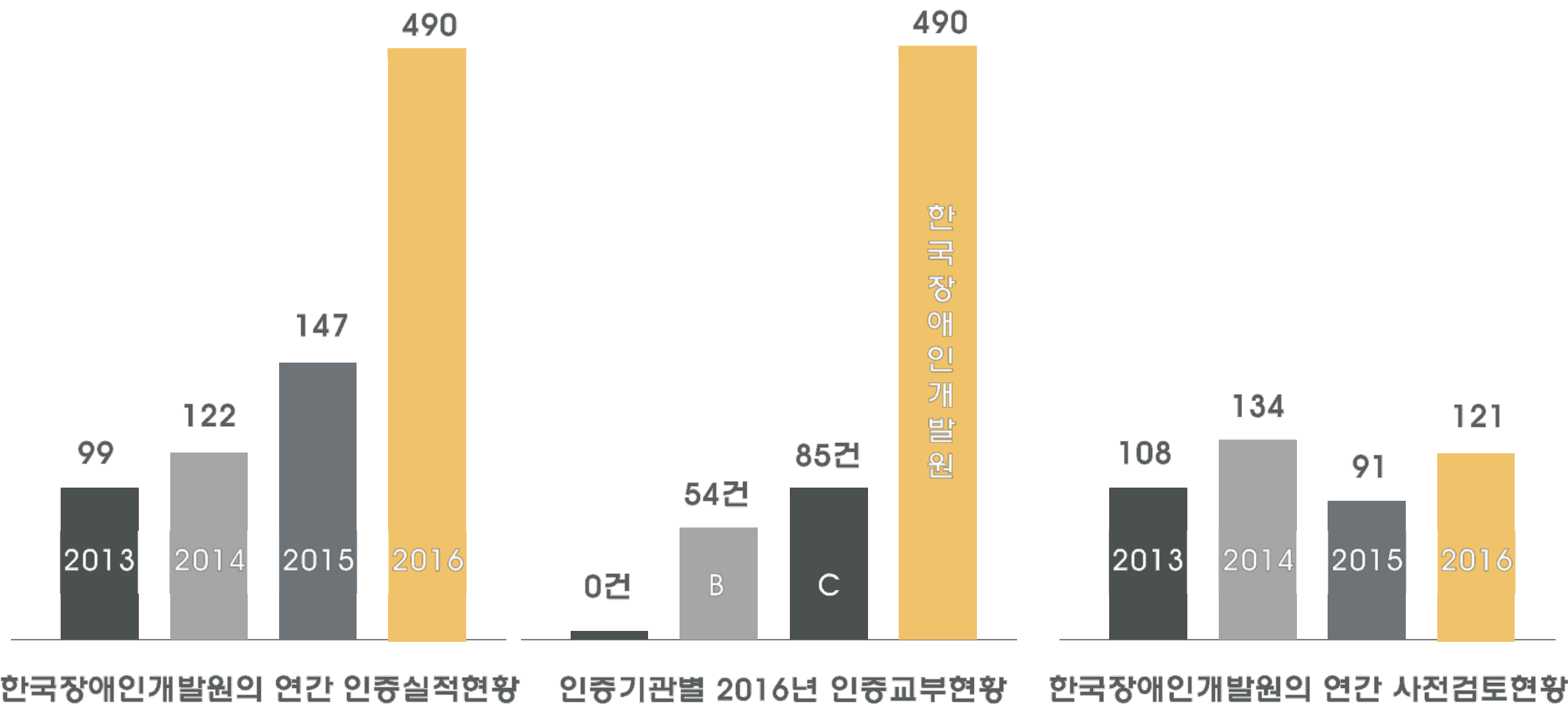


Green

: 건강, 안전, 자연, 평화, 신뢰, 정직

IV. 인증실적

우리원 인증 실적



예비 및 본인증 실적(우리원, 2016년 12월 30일 기준)

연도별	구 분		
	예비인증	본인증	총취득수
2008년	3	1	4
2009년	8	5	13
2010년	15	7	22
2011년	53	7	60
2012년	63	24	87
2013년	73	26	99
2014년	65	57	122
2015년	102	45	147
2016년	421	69	490
총 합	803	241	1044

인증기관별 실적 (2016년 12월 30일 기준)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공사	장애인고용공단	총 계
인증실적	1,044	260	72	1,376

지자체별 실적 (2016년 12월 30일 기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46	196	43	64	41	82	73	30	182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총 합
37	161	201	50	10	68	36	56	1,376

V. 인증제 활성화 방안

- 교 육

: 인증제에 관한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지자체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생 등)

- 홍 보

: 인증제의 추진의도와 효과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 인센티브 마련 : 융적율, 취득세 등

홈페이지 소개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이용(배너클릭)

: <http://www.koddi.or.kr/>

– BF인증 홈페이지 건축물 및 공원

: <http://bf.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사례 : 보도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문정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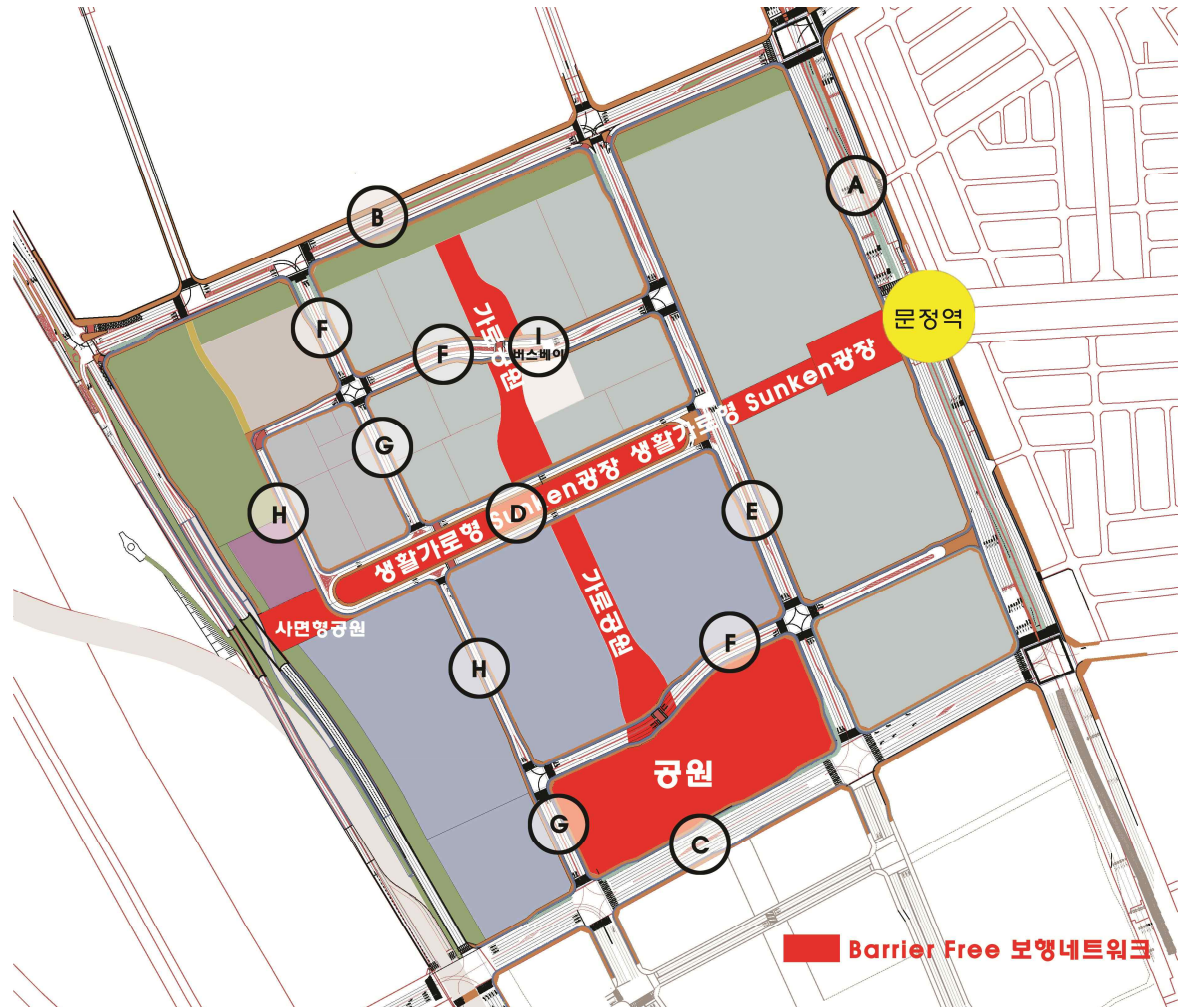
- 사업명 : 문정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07~2011년
- 시행자 : SH공사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면적 : 548,239m²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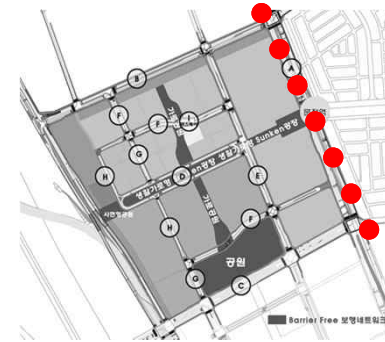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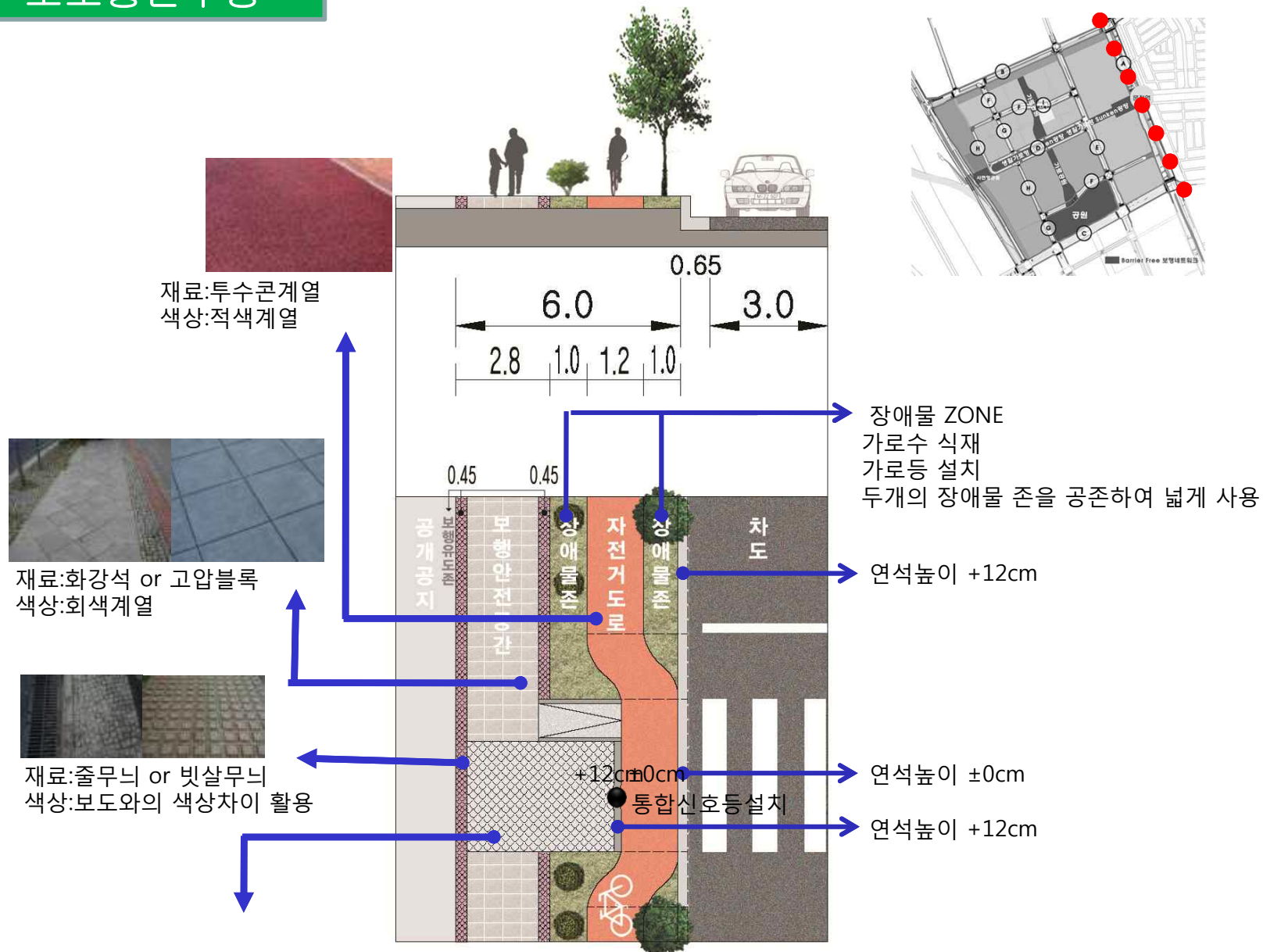
장애물없는 보도

- 모든 도로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 분리
- 장애물구역의 최소 폭
장애물구역은 차도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가로시설물의 최소 설치 폭 이상
- 자전거도로의 설치
자전거도로는 장애물구역과 보도 사이에
1.2m너비의 일방통행으로 설치
- 보행안전구역의 최소 폭
보행안전구역은 폭 2.0m 이상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2.1m 장애물 제거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보도횡단구성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버스정류장

재료:투수콘계열
색상:적색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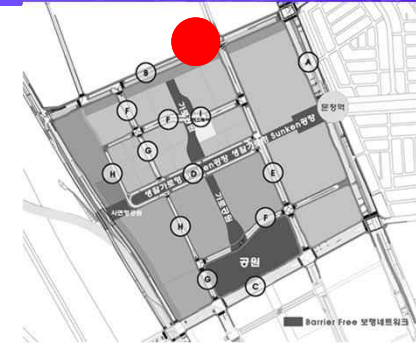
재료:전면경고용블록
색상:발광흰색계열(야광)

재료:화강석 or 고압블록
색상:회색계열

재료:줄무늬 or 빗살무늬
색상:보도와의 색상차이 활용

장애물 ZONE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
안내표시 설치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내
가로수 식재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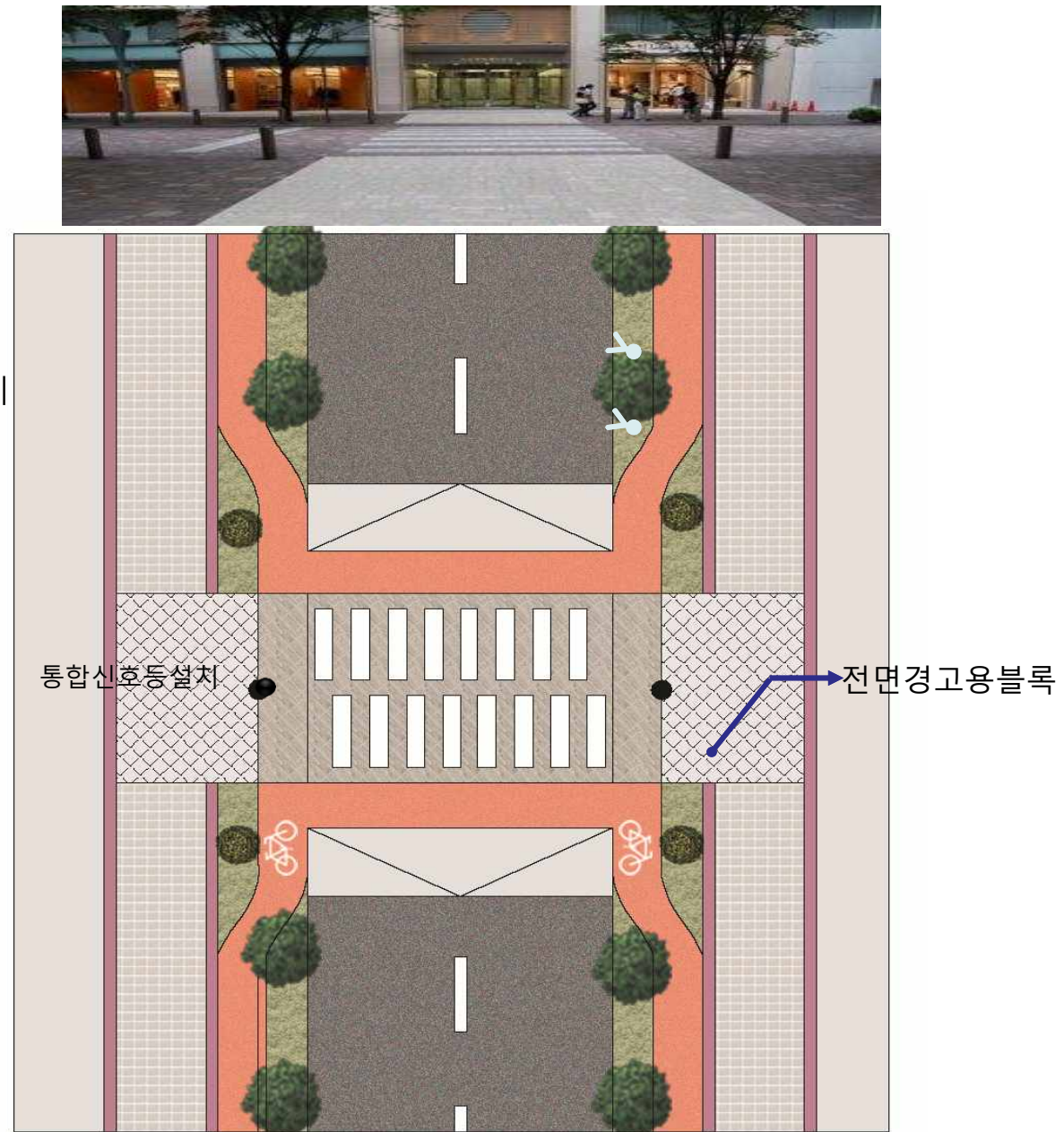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 안전성 확보
일부분 경고블록 사용이 아닌 횡단보도 전면 경고블록 사용
음향신호기→진동신호기 사용
잔여시간표시기 병설 설치
- 통합지주를 사용한 신호등 설치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을 통합하여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

보도 높이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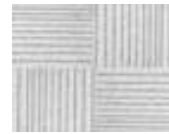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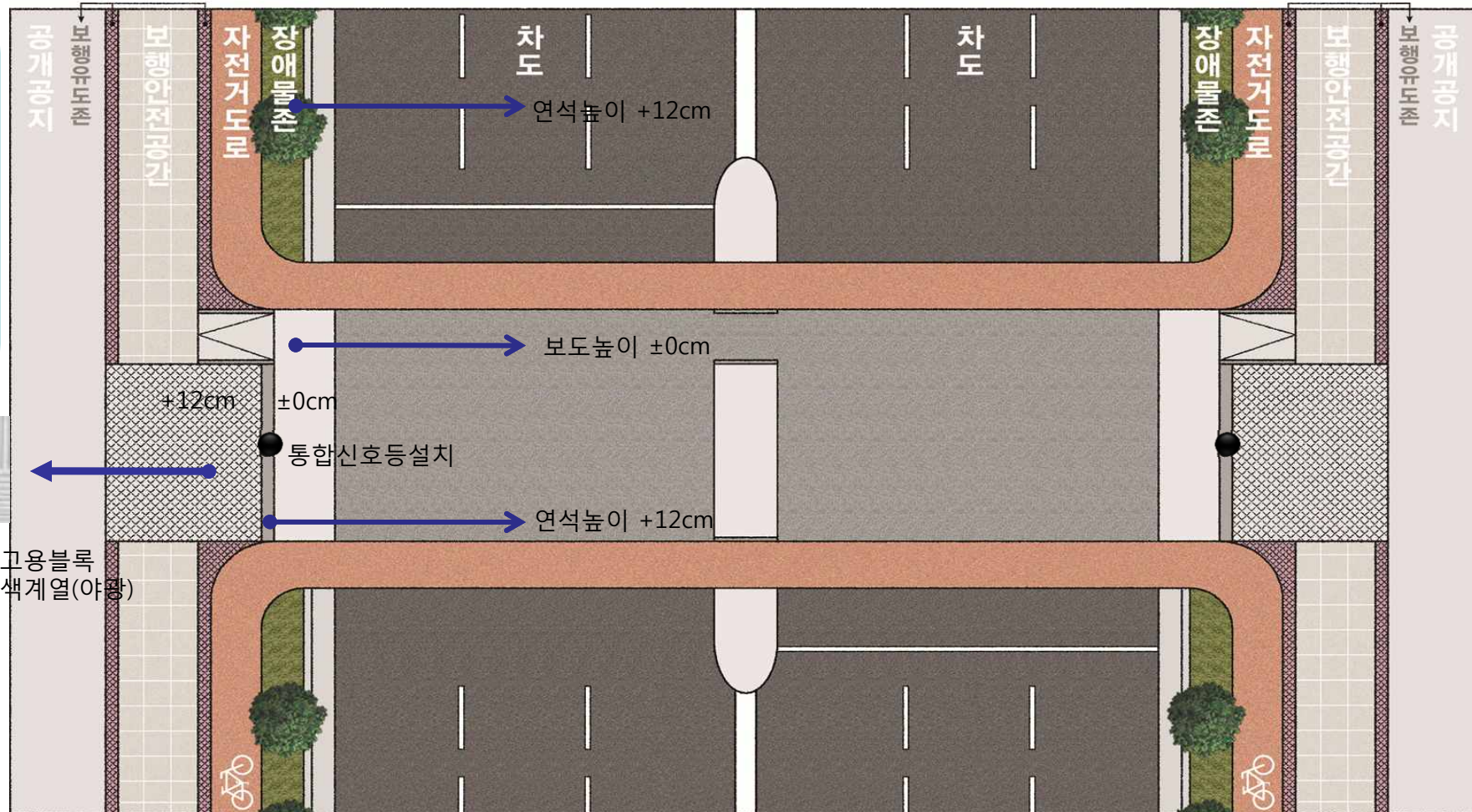
보행섬식 횡단보도

- 4차로 이상 의무 설치
- 보행섬 너비 : 최소 1.8m 이상

- 부분경사로 도입 :
장애물 존이 설치된
보도의 횡단보도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전면 일부분에
부분경사로 도입
(기울기 1/18이하,
90cm이상의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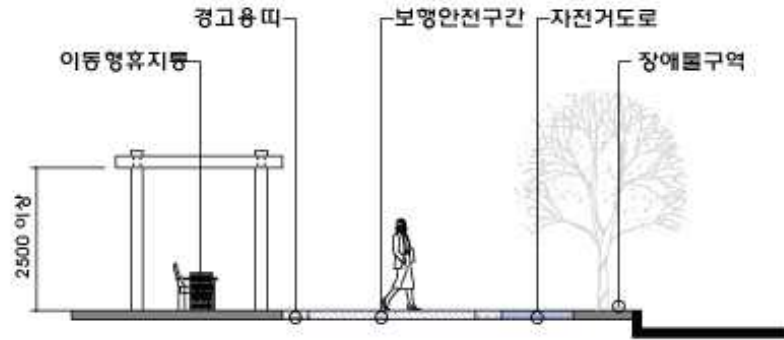


재료:전면경고용블록
색상:발광흰색계열(야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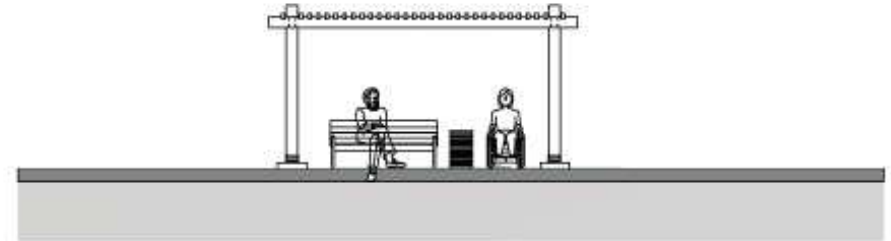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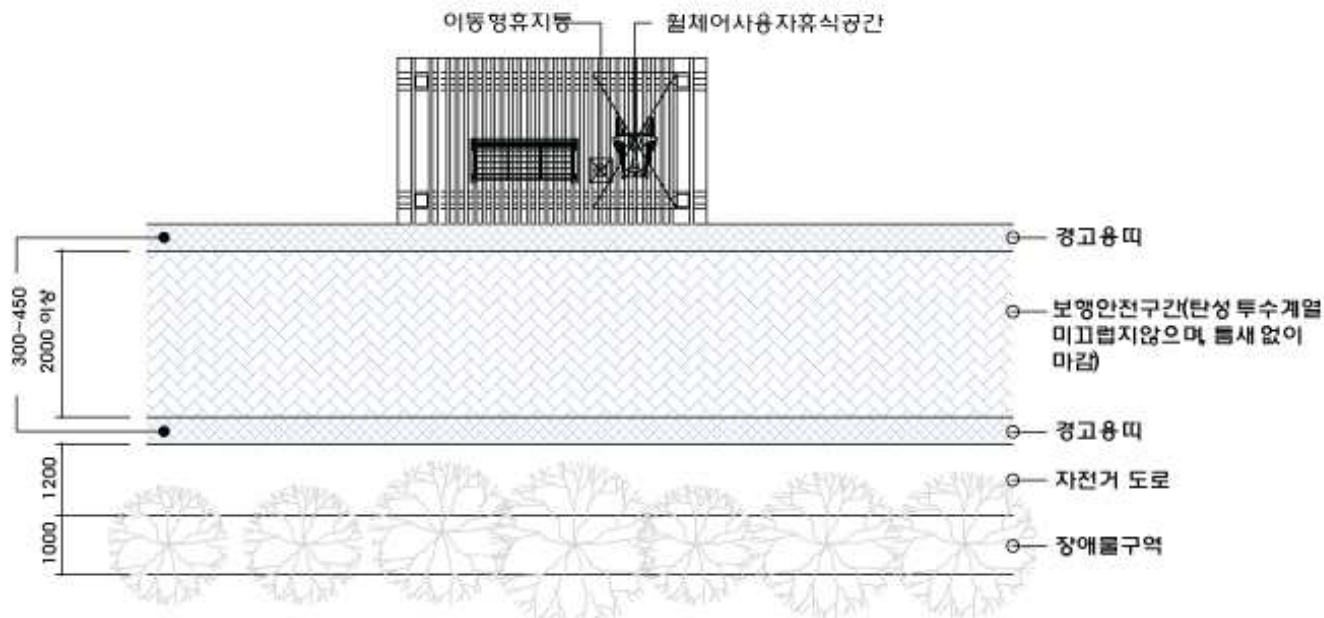
보행로 휴게공간



단면도



입면도



평면도



장애물 없는 보도 설치사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사례 : 공원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공원의 종류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공원
- 도립공원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공원

- 군립공원 : 시 · 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공원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제주지질공원, 울릉도 · 독도 국가지질공원, DMZ 평화지역지질공원 등)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공원의 종류

●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 공 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 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근린 공원	근린생활권	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도 보 권	제한 없음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10만 제곱미터 이상
		광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100만 제곱미터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공원 인증기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 유도 및 안내시설 : 안내설비
- 위생시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편의시설 : 접근 및 이용성, 공원시설, 기타시설
- ※ 공원시설 :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시설(휴게소, 긴 의자 등), 유희시설(그네, 미끄럼틀 등), 운동시설(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교양시설(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편의시설(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공원관리시설(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 BF보행의 연속성: 공원내부 보행로
- 44개 기준(100점)=> 90%이상 최우수, 80%이상 우수, 70%이상 일반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편의시설(접근 및 이용성)

■ 시설까지의 접근로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하도록 단차등이 제거되어야 함



유도안내 표시판 설치



유도안내 표시판 설치



단차없이 수평접근



단차없이 수평접근



1/18이하 경사로 설치



유도안내 표시판 설치



안전보행로 연결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편의시설(공원시설)

■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원)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부분적 통합시설로 설치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부분적 통합시설로 설치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부분적 통합시설로 설치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부분적 통합시설로 설치

○



단차로 인한 휠체어 사용
자 접근이 불가능함

×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불가능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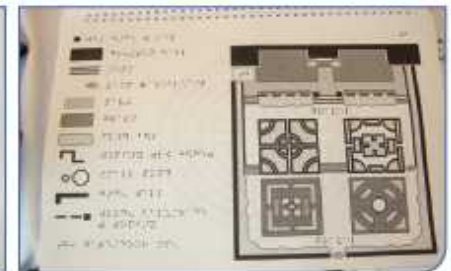
◎ 해외사례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그네 설치



공원 혹은 건축물의 형태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고 점자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공원 안내를 위한 점자관광안내 책자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비치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편의시설(기타설비-휴식공간)

■ 휴식공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여부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 TIP

- 벤치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행동선 주변으로 단차없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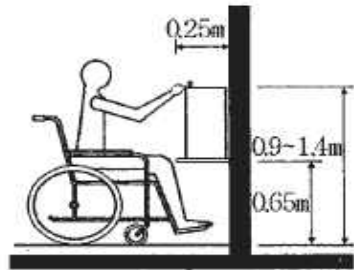


철제어 접근불가능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편의시설(기타설비-음료대 등)



- 기타 설비

-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공중전화높이 및 활동공간 등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사례



휠체어 접근 불가능 (전면 화전반경 (1.4m이상 X 1.4m이상) 확보필요)

■ 음료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분출구 높이 및 조작기
사용 쉬운 형태 만족

△



분출구 높이 및 조작기
사용 쉬운 형태 만족

△



분출구 높이 및 조작기
사용 쉬운 형태 만족

△



분출구 높이 및 조작기
사용 쉬운 형태 만족

△



하부공간 미확보

×



휠체어 접근 불가능

×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사례 : 공원

BF보행의 연속성

■ 보행유도의 연속성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여부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 유도(수목 이용)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 유도(수목 이용)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 유도(물길)

■ BF보행로의 지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 지정여부



감사합니다

